

2021년 한눈에 보이는
태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CONTENTS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1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3
3. 비관세장벽 현황	15
4. 수출 애로사항	25
5. 현지화 자문보고서	27

태국 (THAILAND)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472억 9,840만 달러(한화 약 53조 9,722억 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은 226억 2,970만 달러(한화 약 25조 8,228억 원)로 전체 47.8% 차지
 - (*) 육류 시장이 70억 7,590만 달러(한화 약 8조 743억 원)로 신선식품 중 가장 큰 규모(15.0%)를 차지하며, 뒤이어 채소류(12.7%), 낙농품(9.2%)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46억 6,870만 달러(한화 약 28조 1,495억 원)로 집계
 -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가장 큰 비중(18.9%)을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89억 3,420만 달러(한화 약 10조 1,948억 원)로 집계됨
 - (*) 뒤이어 스낵류 시장은 63억 3,450만 달러(한화 약 7조 2,283억 원)로 13.4% 비중, 영유아용 식품 시장은 30억 1,680만 달러(한화 약 3조 4,425억 원)로 6.4% 비중 차지

< 식품시장 규모(2016~2020)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1,352.3	42,452.2	44,273.3	44,659.0	47,298.4	100.0	5.9
신선식품	19,792.7	20,290.0	21,129.7	21,283.7	22,629.7	47.8	6.3
- 육류	6,234.4	6,377.6	6,626.9	6,661.6	7,075.9	15.0	6.2
- 채소류	5,235.3	5,374.0	5,604.0	5,652.1	6,024.0	12.7	6.6
- 낙농품	3,805.7	3,906.1	4,072.9	4,107.5	4,356.6	9.2	6.1
- 과일 및 견과류	3,724.2	3,821.9	3,984.5	4,017.7	4,281.1	9.1	6.6
- 유지류	793.1	810.4	841.4	844.8	892.1	1.9	5.6
가공식품	21,559.6	22,162.2	23,143.6	23,375.3	24,668.7	52.2	5.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650.5	7,828.6	8,138.0	8,182.1	8,934.2	18.9	9.2
- 스낵류	5,144.1	5,368.4	5,677.5	5,806.6	6,334.5	13.4	9.1
- 영유아용 식품	2,949.4	3,040.1	3,183.3	3,223.7	3,016.8	6.4	△6.4
- 편의식품	2,814.3	2,876.5	2,986.7	2,999.3	3,172.8	6.7	5.8
- 스프레드 및 당류	1,686.9	1,704.7	1,762.2	1,761.3	1,783.0	3.8	1.2
- 소스 및 향신료	1,314.4	1,343.9	1,395.9	1,402.3	1,427.4	3.0	1.8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7월 기준 태국 인구는 6,619만 명으로 집계됨
 - 중위연령은 39세로, 전체 인구에서 25~54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25~54세 연령대 44.64%, 14세 이하 16.20%, 15~24세 12.82%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여성의 중위연령은 40.1세로 나타나 남성의 중위연령인 37.8세보다 높음
 -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여성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1.08%이며, 남성의 비중이 48.92%로 집계됨
-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기준 월평균 대졸-사무직 초임 임금은 2만 3,833바트(한화 약 89만 9천원)이고, 고졸-생산직 초임 임금은 1만 1,860바트(한화 약 44만 7천원)임
 - 태국은 소득 불평등이 큰 편이나 최근 중산층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 태국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큰 나라로 최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2.1%를 차지하고 있음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20년 기준 677.6달러(한화 약 77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324.2달러(한화 약 36만 9천원)로 집계되며, 가공식품 소비액은 353.4달러(한화 약 40만 3천원)로 신선식품 소비액보다 다소 높음
 - (*) 신선식품 중 육류 소비액이 101.4달러(한화 약 11만 원)로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 중에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소비액이 128.0달러(한화 약 14만 6천 원)로 가장 높음

< 1인당 식품 소비액(2016~2020) >

(단위 :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99.6	613.4	664.7	641.4	677.6	100.0	5.6
신선식품	287.0	293.2	331.3	305.9	324.2	47.8	6.0
- 육류	90.4	92.2	95.5	95.7	101.4	15.0	6.0
- 채소류	75.9	77.7	80.7	81.2	86.3	12.7	6.3
- 낙농품	55.2	56.4	85.7	59.0	62.4	9.2	5.8
- 과일 및 견과류	54.0	55.2	57.4	57.7	61.3	9.1	6.2
- 유제품	11.5	11.7	12.1	12.1	12.8	1.9	5.8
가공식품	312.6	320.2	333.3	335.7	353.4	52.2	5.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0.9	113.1	117.2	117.5	128.0	18.9	8.9
- 스낵류	74.6	77.6	81.8	83.4	90.8	13.4	8.9
- 영유아용 식품	40.8	41.6	43.0	43.1	45.5	6.7	5.6
- 편의식품	42.8	43.9	45.9	46.3	43.2	6.4	△6.7
- 스프레드 및 당류	24.5	24.6	25.4	25.3	25.5	3.8	0.8
- 소스 및 향신료	19.1	19.4	20.1	20.1	20.5	3.0	2.0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54.7kg으로 가장 큰 편
(*) 이어서 낙농품 소비량 32.4kg, 과일 및 견과류 소비량 23.8kg, 육류 소비량 19.2kg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연간 유지류 소비량은 2.9kg 수준
- 가공식품 소비량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낵류, 스프레드 및 당류 순
(*) 1인당 연간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은 89.7kg으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됨
(*) 1인당 스낵류 소비량은 18.7kg, 스프레드 및 당류 소비량은 14.3kg으로 각각 집계되었고, 편의식품 소비량이 12.8kg, 소스 및 향신료 11.1kg, 영유아용 식품 9.0kg 수준으로 나타남

< 1인당 식품 소비량(2016~2020) >

(단위 : kg,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51.2	51.5	52.7	52.2	54.7	△0.9
	- 낙농품	26.6	27.7	29.4	30.1	32.4	2.4
	- 과일 및 견과류	22.1	22.2	22.7	22.5	23.8	△0.9
	- 육류	15.2	16.1	17.3	18.1	19.2	4.6
	- 유지류	2.7	2.7	2.8	2.8	2.9	0.0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6.2	78.0	81.2	81.7	89.7	0.6
	- 스낵류	15.3	15.9	16.8	17.1	18.7	1.8
	- 스프레드 및 당류	14.7	14.6	14.7	14.4	14.3	△2.0
	- 편의식품	11.6	11.8	12.2	12.1	12.8	△0.8
	- 소스 및 향신료	9.7	10.6	10.6	10.7	11.1	0.9
	- 영유아용 식품	9.0	9.2	9.6	9.6	9.0	0.0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 278억 2,895만 8,000달러(한화 약 31조 7,556억 원)로 전년 대비 2.8% 감소
- 수출 상위국가는 중국(21.0%), 일본(11.5%), 미국(10.4%)이며, 뒤이어 베트남(5.1%), 캄보디아(3.9%), 인도네시아(3.7%) 등 주로 아시아 국가로 수출
(*)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58억 4,738만 1,000달러(한화 약 6조 6,724억 원)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 對일본 수출액은 31억 9,709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6,482억 원)로 전년 대비 3.4% 감소, 對미국 수출액은 28억 8,446만 8,000달러(한화 3조 2,915억 원)로 전년 대비 11.4% 증가
- (*)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14억 2,608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6,273억 원), 캄보디아 수출액 10억 7,724만 달러(한화 1조 2,292억 원)로 13.8% 증가, 뒤이어 인도네시아(3.7%), 홍콩(3.6%), 말레이시아(3.2%) 순으로 집계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3% 감소한 5억 3,475만 1,000달러(한화 약 6,102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5%의 높은 성장률 기록

<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4,801,052	26,551,165	29,014,092	28,630,153	27,828,958	100	△2.8	2.9
1 중국	3,243,796	3,585,737	4,125,126	4,929,453	5,847,381	21.0	18.6	15.9
2 일본	2,996,151	3,226,207	3,289,529	3,310,573	3,197,091	11.5	△3.4	1.6
3 미국	2,155,326	2,188,757	2,455,848	2,589,898	2,884,468	10.4	11.4	7.6
4 베트남	1,368,484	1,569,858	1,553,866	1,442,870	1,426,086	5.1	△1.2	1.0
5 캄보디아	996,642	763,327	808,433	946,288	1,077,240	3.9	13.8	2.0
6 인도네시아	1,329,205	1,277,792	1,853,632	1,503,673	1,017,635	3.7	△32.3	△6.5
7 홍콩	652,905	649,081	755,813	843,158	1,009,954	3.6	19.8	11.5
8 말레이시아	892,457	913,509	1,101,583	1,078,959	891,342	3.2	△17.4	△0.03
9 영국	851,253	829,945	942,830	953,955	844,511	3.0	△11.5	△0.2
10 미얀마	1,247,123	1,029,549	1,119,286	890,984	841,805	3.0	△5.5	△9.4
12 대한민국	372,042	438,570	630,529	735,400	534,751	1.9	△27.3	9.5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정미(11.7%), 기타 닭고기 육류 조제품(8.7%), 두리안(7.4%), 기타조제 식료품(4.8%) 등이 있음
- (*) 정미의 수출액은 32억 6,806만 4,000달러(한화 약 3조 7,292억 원)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함
- (*) 기타 닭고기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24억 1,497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7,557억 원)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두리안의 수출액은 20억 5,968만 달러(한화 약 2조 3,503억 원)로 전년 대비 41.6%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2.6%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4,801,052	26,551,165	29,014,092	28,757,056	27,828,958	100	△3.2	2.9
1	정미	3,785,264	4,501,627	5,042,485	3,736,240	3,268,064	11.7	△12.5	△3.6
2	기타 육류 조제품 중 닭으로 만든 것	2,032,867	2,247,552	2,411,967	2,588,332	2,414,977	8.7	△6.7	4.4
3	두리안	498,097	648,935	936,009	1,454,776	2,059,680	7.4	41.6	42.6
4	기타 조제 식료품	1,123,218	1,256,778	1,272,827	1,422,731	1,322,626	4.8	△7.0	4.2
5	매니옥[카사바] 전분	1,111,653	1,007,619	1,337,062	1,217,239	1,131,892	4.1	△7.0	0.5
6	냉동 절단육 및 설육	488,171	576,380	654,142	773,356	871,030	3.1	12.6	15.6
7	기타 사탕수수당	1,013,616	1,161,585	1,566,785	1,722,395	867,293	3.1	△49.6	△3.8
8	기타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 으로 순수한 자당	1,264,868	1,506,509	1,445,744	1,372,851	863,350	3.1	△37.1	△9.1
9	기타 장류	560,436	615,714	690,004	736,525	795,840	2.9	8.1	9.2
10	카사바(Manioc) 신선, 건조, 슬라이 스, 펠렛형태	1,107,158	1,069,727	889,578	522,548	682,183	2.5	30.5	△11.4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0년 전체 농식품 수입액은 131억 3,431만 9,000달러(한화 약 14조 9,875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성장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14.9%), 중국(14.9%), 미국(11.8%)이며 전체 41.6% 점유
 - (*)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9억 5,780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2,237억 원)
 - (*) 미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5억 4,828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7,667억 원)로 집계
 - 한국산 수입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7%로 지속적인 성장세, 2020년 수입액 2억 5,031만 9,000달러(한화 약 2,856억 원)로 집계

<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0,911,383	11,202,458	11,730,489	12,485,662	13,134,319	100.0	5.2	4.7
1 브라질	1,460,435	1,531,946	1,467,585	1,504,283	1,961,249	14.9	30.4	7.6
2 중국	1,639,650	1,610,696	1,801,019	1,988,117	1,957,804	14.9	△1.5	4.5
3 미국	1,454,809	1,437,847	1,850,505	1,721,358	1,548,281	11.8	△10.1	1.6
4 호주	436,024	487,501	499,945	557,443	652,732	5.0	17.1	10.6
5 인도네시아	466,073	582,066	492,424	472,329	589,813	4.5	24.9	6.1
6 베트남	366,993	412,899	403,447	404,803	523,736	4.0	29.4	△9.3
7 뉴질랜드	383,319	443,520	435,324	477,683	493,229	3.8	3.3	6.5
8 싱가포르	340,989	379,302	402,737	429,564	484,759	3.7	12.8	9.2
9 말레이시아	395,099	422,939	433,854	448,641	472,109	3.6	5.2	4.6
10 인도	239,297	312,804	362,357	411,370	408,230	3.1	△0.8	14.3
17 대한민국	134,825	199,153	218,699	218,633	250,319	1.9	14.5	16.7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7.7%), 기타조제 식료품(6.1%), 밀과 메슬린(5.7%) 등이 있음
- (*)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2% 감소한 10억 1,116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1,538억 원)로 집계
- (*) 기타조제 식료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8억 727만 7,000달러(한화 약 9,212억 원)로 집계
- (*) 밀과 메슬린의 수입액은 7억 5,460만 3,000달러(한화 약 8,611억 원)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5% 감소하는 추세
- (*) 뒤이어 신선 및 건조 매니옥(카사바)(3.2%), 신선 사과(2.0%), 기타 맥아추출물 및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1.9%)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0,911,383	11,202,458	11,730,489	12,485,662	13,134,319	100.0	5.2	4.7
1 대두유 오일 케이크 및 유박	1,041,633	1,170,448	1,257,538	1,250,851	1,011,169	7.7	△19.2	△0.7
2 기타 조제 식료품	564,414	589,769	609,573	679,508	807,277	6.1	18.8	9.4
3 밀과 메슬린	944,686	591,470	707,442	767,215	754,603	5.7	△1.6	△5.5
4 신선 및 건조 매니옥(카사바)	315,664	369,697	273,600	265,664	420,775	3.2	58.4	7.4
5 신선 사과	240,949	201,927	190,572	212,516	260,284	2.0	22.5	1.9
6 기타 맥아추출물 및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	193,733	238,773	214,251	208,336	249,452	1.9	19.7	6.5
7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106,542	155,838	181,055	170,765	185,054	1.4	8.4	14.8
8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고체 상태의 밀크와 크림	122,338	153,368	136,354	162,469	182,102	1.4	12.1	10.5
9 건조 후추 또는 고추류 (부수지 않은 것)	132,753	153,455	138,159	176,855	165,955	1.3	△6.2	5.7
10 신선 포도	148,863	170,253	149,934	145,996	148,384	1.1	1.6	△0.1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對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태국 수출액 전년 대비 12.1% 증가한 2억 2,083만 8,400달러(한화 약 2,520억 원)로, 연평균 17.7%의 수출 성장세 기록
 - 농산물 수출액이 2억 887만 6,300달러(한화 약 2,383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94.6% 차지하며,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 비중은 각각 2.1%, 3.4%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에는 혼합조제식료품(12.4%), 라면(12.1%), 딸기(3.5%), 커피조제품(3.5%), 기타소스제품(3.1%) 등이 있음

- (*) 혼합조제식료품은 2,743만 9,300달러(한화 약 313억 원)로 전년 대비 98.1% 증가했고, 라면 수출액은 또한 전년 대비 41.0% 증가한 2,682만 3,300달러(한화 약 306억 원)로 집계
- (*) 딸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772만 7,400달러(한화 약 88억 원), 커피조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765만 8,500달러(한화 약 87억 원)로 집계
- (*) 기타소스제품 수출액은 678만 2,200달러(한화 약 77억 원)로 전년 대비 79.4% 증가

< 한국의 對태국 수출 규모(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15,222.0	183,609.0	183,514.2	197,033.80	220,838.40	100.0	12.1	17.7
농산물	110,854.4	174,772.3	172,252.4	187,123.20	208,876.30	94.6	11.6	17.2
축산물	2,282.7	4,045.5	5,804.3	4,088.80	4,554.80	2.1	11.4	18.9
임산물	2,084.9	4,791.2	5,457.5	5,821.90	7,407.30	3.4	27.2	37.3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對태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증감률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15,222.0	183,609.0	183,514.2	197,033.8	220,838.4	100.0	12.1	17.7
1	혼합조제식료품	13,203.0	13,634.8	15,132.3	13,851.6	27,439.3	12.4	98.1	20.1
2	라면	6,259.2	18,947.9	19,265.3	19,017.1	26,823.3	12.1	41.0	43.9
3	딸기	4,150.9	5,902.8	5,824.2	6,727.2	7,727.4	3.5	14.9	16.8
4	커피조제품	2,209.6	2,084.0	5,031.4	8,112.3	7,658.5	3.5	△5.6	36.4
5	기타소스제품	2,209.40	2,188.40	3,341.10	3,780.00	6,782.2	3.1	79.4	32.4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통관제도

- 태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기 전 태국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해야 함
 - 수입식품은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부착식품 ▲일반 식품으로 분류
- 태국 농식품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식통관과 정식통관으로 구분함
 - 운송비 제외 상품 가치 및 금액(Invoice value)이 약 100달러(한화 약 11만 3,500원) 이하인 경우 약식통관을 거치며, 품목에 따라 정식통관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신고는 전자세관 시스템(e-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전송함
 - 세관신고서 전송 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수입 통제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서류 동봉
- 태국 식약청(FDA)은 2020년 1월부터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첨부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2020년 8월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를 적용함
 - 관련 규정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추가적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시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품목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샘플 검사 진행 예정임
 - (1)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해 샘플검사 진행함.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함.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해야 하며 COA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결과 해당 잔류농약 성분 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통관 진행,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수입금지 및 압수, 폐기처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COA 제출이나 샘플 검사와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함.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

- (*) 리스트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샘플검사는 통관을 위한 절차로 간주됨
 - (2) **위험군품목(High Risk)** : 하단 10개 품목 대상 검사 빈도를 높인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며 수입물품 회수 및 폐기처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
 -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21.10월 FDA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문 발표 예정으로 위험군 품목 중 포도, 딸기, 감귤은 저위험군으로 변경(완화)되며 석류, 리치는 위험군으로 신규 추가될 예정임
 - (3) **저위험군품목(Low Risk)** : 고위험군, 위험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 물품 통관 전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세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세 등 납부를 위한 일련 번호가 발급됨
-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 또는 전자지불 시스템(e-Bill System) 이용
-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화물검사 방식이 결정됨
- 녹색 라인(검사 제외), 적색 라인(화물 개봉), 황색 라인(관세 면제)으로 구분되며, 녹색 라인의 경우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출허가가 이루어짐
 - 적색 라인의 경우 화물의 물리적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가능
-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하며 특별통제식품은 사전에 식약청 등록이 필요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controlled foods)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 가장 높음 · 식약청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표준식품 (Standardized foods)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식약청 규정 준수 여부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표준라벨부착식품 (Foods with standardized labels)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 빵, 현미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일반식품 (General foods)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약청 식품 등록 불필요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출처 : 태국 식약청(FDA)

□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

-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

금지품목 (Prohibited materials)	· 실험 및 연구용에 한해서만 수입 허용 · 방콕 국제공항, 방콕 항, 방콕식물검역소 등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제한품목 (Restricted materials)	· 식물위생증명서 동봉 필요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비규제 품목 (Unprohibited materials)	·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 해당하며 별도의 수입 허가 및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검사를 위해 수입 시 검역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됨 · 병해충 검출 시 검역처리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음

출처 : 태국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No.2) B.E. 2542)

- 태국으로 수출 가능한 신선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 개 종이 있음
-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가능함
 - 태국 측은 '07. 7월부터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사과,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함
 - 이 중 검역 협상을 통해 사과, 배, 딸기, 포도, 감, 복숭아, 감귤, 참외(멜론)가 조건부 수출 가능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하기의 요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함

대상품목	사과, 배, 딸기, 포도, 감, 복숭아, 감귤, 참외(멜론)
주요 수출요건 및 식물위생증 (PC) 부기사항	· 수입허가서 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 통해 수출과수원(온실) 및 선과장 등록(선과장은 SOP 구비) · 포장상자 외부에 하기 5가지 항목 및 'Export to Thailand' 부착 - Product or produce of Korea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 Name of exporting company (수출 업체명) - Name of fruit (과실명) - Packinghouse code(PHC) (선과장 등록 번호) - Production unit code(PHU) (참여농가 등록 번호) · 감귤의 경우 재배지검역(오렌지더닝이병 조사) 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SOPP 또는 과산화초산으로 세척, 태국 측 국외 생산지조사 실시 등 · 참외, 멜론의 경우 호박과실파리 모니터링(착과기~수확기) 필요, 태국측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품목별 수출검역요령 고시 참고하여 태국 측이 요구하는 부기사항 기재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태국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특히, 감귤은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참외(멜론)는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함(수출 시즌 전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축산물

- 멸균 식육가공품

□ 협상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실류 : 밤,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고구마, 수삼, 콜라비, 비트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파, 양파,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튜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 축산물

- 젤라틴(캡슐), 아이스크림, 어유, 오징어간 분말, 계육분, 반려동물 사료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태국 측은 '07. 7월부터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하였음

○ 축산물

- 가금육, 열처리가금육, 쇠고기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 인터뷰 업체 정보 >

업체명	Fruitage TH (태국)
업체 유형	현지 수입과일 유통업체
담당자명	(-)

-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신선식품은 딸기임. 지금 시기에 딸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한국산 배에 대한 현지 수요도 높은 편임
- 자사는 과일을 주로 수입하며,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배, 딸기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수입하고 있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역시 딸기인데,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보관에 용이한 농산물이기 때문임
- 한국에서 감 또는 복숭아도 수입하고 싶지만, 한국산 과일은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 수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세를 내야 하며, 많은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수입 통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움

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태국 보건부는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칸나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 해당 공고를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으로 채택하여 고시함
 -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올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0.2%를 초과하지 않고 마약물질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마초 및 대마에서 유래한 칸나비디올 추출물은 마약물질법 부속서 5에 명시된 마약물질 분류에 대한 보건부 고지에서 면제되며, 신식품으로 인정되어 식품 사용이 허용됨
- 태국은 돼지열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5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산 돼지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태국 보건부는 2020년 5월 8일 신선과채류 수입 시 태국 공증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의거하여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COA)를 제출하도록 고시함. 수출국 담당 정부 관리기관, ISO/IEC 17025 인증 획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샘플 검사 진행
- 2020년 태국 보건부는 살충제 성분 중 5가지를 위험 물질로 추가하고, 최대 허용량을 없애는 대신 Zero-Tolerance 방식(불검출 원칙)의 규제를 적용함. 최대허용량(MRL)을 없애는 대신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한도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은 수입, 유통, 판매, 구매가 금지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danger.html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food.fda.moph.go.th/law/index.php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danger.html

□ 통보문 개정 현황(2021년)

○ 보건부(MOPH) 공고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

문서번호	G/TBT/N/THA/612, G/SPS/N/THA/390/Add.1, G/SPS/N/THA/418, G/SPS/N/THA/418/Add.1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G/TBT/N/THA/612] - 2021년 4월 28일 식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초 또는 대마 성분에 대해 규정한 보건부 공고안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 이 통보됨 - 2021년 5월 13일 보건부 공고안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 이 채택되어 보건부 공고(제427호)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으로 고시됨 [G/TBT/N/THA/418] - 2021년 6월 14일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올의 함량이 중량의 0.2%를 초과하지 않고 식품 규정을 준수할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부 공고안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 이 고시됨 - 보건부 공고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 이 2021년 8월 27일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으로 공고됨
통보일	2021.10.22
시행예정일	2021.08.28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epingalert.org/en#/browse-notifications/details/89630

○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태국은 2020년 6월5일부터 한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 - OIE(국제수역사무국)가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 돼지열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국으로부터 산 돼지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조치는 3개월씩 계속 연장되고 있음
통보일	2020.11.16
시행예정일	2020.10.03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 TB0146673

(2) TBT

□ 주요 TBT 내용

- 태국 식약청은 2021년 6월 거짓 정보를 활용한 식품 광고를 방지하고, 사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식품 광고를 감독하기 위해 식품 광고 규칙 B.E.2021을 발표함. 해당 규칙에는 식품 섭취 경고 문구 표시, 품목별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함
- 태국 보건부는 식품의약품국 책임 하의 유해물질 라벨에 관한 보건부 고시안을 제안함. 본 고시안의 목적은 식품의약품국 관리 하의 유해물질 라벨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추가로 개정하기 위함. 태국에서 제조, 판매, 소유되는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신호어(위험/경고)는 소형포장용 의무제품 라벨 요소 목록에 추가됨
- 식품 용기에 대한 규제
 -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에 관한 부처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일반 요건 및 적합성과 시험 등에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식품용 비닐봉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전자레인지 재가열용 비닐봉투에 대한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태국 산업표준연구소가 제안한 TIS 1136-2559(2016)-식품 포장용 신축성 랩으로 채택되었음을 통보함
 - ‘식품과 접촉되며 불소 중합체가 코팅된 조리기구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태국 산업표준원은 일반식품과 뜨거운 식품용 무색 종이 및 보드용기에 적용되는 특정 화학물질, 농도를 제안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foodlabel.html
식품 첨가물 허용치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foodlabel.html
포장 규정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package.html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중량 · 유통기한 · 영양성분	· 원료 · 인공조미료 · 업체정보 · 원산지	· 로트 번호 · 경고문 · 보관방법 · 사용(섭취)방법 · 알레르기 정보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라벨 내용은 태국어로 표기할 것	
		태국어로 표기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것	
	제품명	제품명은 구체적이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할 것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을 지칭하는 제품명 또는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사용할 것	
		식품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를 표시할 것 (예: 건조, 농축, 훈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중량	미터법(Metric system)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할 것	
		액상 식품의 경우, 부피 기준으로 표기할 것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할 것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할 것	
	유통기한	‘Best before’ 혹은 ‘Best before end’ 와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할 것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할 것	
	영양성분	영양 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포함할 것	
		본래 영양소가 없는 식품의 경우, ‘free’ 또는 ‘low’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원료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할 것	
	업체정보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표기할 것	
	원산지	제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 제2국을 라벨 상의 원산지국으로 간주할 것	
	로트 번호	제품 포장 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영구적으로 표기할 것	
	경고문	경고 문구는 5mm 이상의 어둡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배경색과 반대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할 것	
	보관조건	실온보관 이외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할 것	
	사용(섭취)방법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식품 알레르기 정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성분정보를 표기할 것	

자료 : 태국 식품의약청(FDA)

○ 신선식품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พริกหวานแดงโครงการหลวง 로알 프로젝트의 파프리카	
순중량	120g	
생산일	2021-11-22	
유통기한	2021-11-28	
섭취방법	ควรล้างก่อนบริโภค 세척 후 드세요	
보관방법	Best Keep Temp : 6~8℃ 최적 보관 온도 : 6~8℃	
제조업체 정보	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 มูลนิธิโครงการหลวง 65 หมู่ 1 ถ.สุเทพ อ.เมือง จ.เชียงใหม่ 50200 โทร (053)-211-656, (053)-532-4001 www.royalprojectthailand.com	로알 프로젝트 본사 65무1, 수텟로드, 무앙지구 치앙마이 50200 전화 053-211-656, 053-532-4001 www.royalprojectthailand.com
식품 생산시설 번호	550-2-01048	
식품 일련번호	1704401	

○ 건강기능식품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แล็กโต-ฟิต (ผลิตภัณฑ์เสริมอาหาร) 락토-핏 (건강기능식품)	
순중량	20 กรัม(10ซอง) 20g(10포)	
원재료명	ผงองุ่นแดง 0.47กรัม, น้ำสนับฉนวนจากเนื้อปวฉนวนกรรมวิธี 0.176 กรัม, กาแลคโต-โอลิโกแซคคาไรด์ 0.04 กรัม, บาซิลลัส แอ็กทูแลน 0.0332 กรัม, ฟรุคโตโอลิโกแซคคาไรด์ 0.03 กรัม, แล็กโตบาซิลลัส เฟลนทาร์ม สายพันธุ์ 299วี 0.0166 กรัม, นมโปรตีนชนิดเข้มข้น 0.0148 กรัม, แล็กโตบาซิลลัส แอซิโดฟิลัส 0.01442 กรัม, บีฟิตแบคทีเรีย บีฟิต 0.00252 กรัม, ผงนม 0.001 กรัม, ผงเกรปฟรุต 0.00002 กรัม, สารให้ความหวานแทนน้ำตาล (INS 966) (INS967) 적포도 분말 0.47g, 팜유 0.176g, 갈락토올리고사카라이드 0.04g, 바실러스 코그란 0.0332g, 프락토올리고사카라이드 0.03g,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균주 299V 0.0166g, 농축 우유 단백질 0.0148g,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0.01442g,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0.00252g, 오렌지 분말 0.001g, 자몽 분말 0.00002g, 설탕 대체 감미료(INS 966) (INS967)	
섭취방법	รับประทานวันละ 1 ซอง 1일 1포 하세요	
보관방법	เก็บในที่แห้งจากมือเด็ก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경고	1. เด็กและสตรีมีครรภ์ไม่ควรรับประทาน 2. ควรกินอาหารหลักหลายครบ 5 หมู่ ในสัดส่วนที่เหมาะสมเป็นประจำ 3. “ข้อมูลสำหรับผู้ป่วย” : มีนม, เต้านมอักเสบ, โรคเบาหวาน, โรคไต ไม่มีผล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 หรือรักษาโรค	1. 어린이, 임산부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2. 5가지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올바른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정보 : 우유, 밀에서 추출한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없습니다.
제조업체 정보	บริษัท ชองกง ดอง เฮลท์ แอนด์ คอสเมติก จำกัด, ประเทศไทย	종근당 건강(주), 대한민국
수입 유통업체 정보	บริษัท เจนนิส บีน จำกัด อยู่เลขที่ 20/8 หมู่ที่ 1 ซงนายะ ถ.สายวน ตราไทย อ.เมืองภูเก็ต จ.ภูเก็ต 83130	제니스빈(주) 주소 20/8 무 1 송나야, 사이유안 로드, 라와이 SD, 무앙 푸켓, 푸켓 83130
생산시간	ดูที่ผลิตภัณฑ์ 제품 참조	
제조일자	ดูที่ผลิตภัณฑ์ 제품 참조	
만료일	ดูที่ผลิตภัณฑ์ 제품 참조	
FDA 등록 번호	อย. 83-4-00659-5-0011 FDA 83-4-00659-5-0011	
제조번호	21A21006091	
유통기한	2023.01.12	

□ 인증

[필수 인증]

○ 태국 식약청(FDA) 허가

- 태국 식약청(FDA) 허가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시 필수로 취득하여야 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대규모 제조업체는 제조허가서, 소규모 제조업체는 제조 번호를 부여받음

• 인증명	• 태국 식약청(FDA) 허가
• 발행 및 검사기관	• 태국 식약청(FDA)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제품등록서 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 비용	• 200~5,000 바트
• 소요기간	• 3일 (특별통제식품은 35~90일)
• 절차	•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허가 승인여부 결정 → 식품일련번호 발급 → 승인된 서류 회신



○ GMP

- 태국 공중보건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생산 안전에 관한 인증인 GMP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입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GMP에 상응하는 HACCP, ISO등의 인증을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인증명	• GMP
• 발행 및 검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식품 안전관리 계획서, 인증 신청서 등
• 비용	• 5만원
• 소요기간	• 14일
• 절차	•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및 평가 → 판정 → 인증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GMP, HACCP, ISO 22000 인증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 인증명	• HACCP
• 발행 및 검사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 비용	• 20만원
• 소요기간	• 약 40일
• 절차	•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ISO 22000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인증명	• ISO 22000
• 발행 및 검사기관	• ISO 등록 시험 기관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인증심사 신청서
• 비용	•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 소요기간	•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 절차	•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선택 인증]

○ CICOT(태국 할랄 인증)

- CICOT 인증은 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임. 2015년 기준 태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품의 25%가 할랄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음. 본 인증은 취득 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60일 전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인증명	• CICOT(태국 할랄 인증)
• 발행 및 검사기관	• CICOT(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할랄 매뉴얼, 원재료 목록, 제품 라벨 샘플 등
• 비용	• 약 11,500 ~ 21,500 바트
• 소요기간	• 약 60일
• 절차	• 서류제출 → (신규사업자) 할랄 교육 → 서류 승인 → 현장실사 및 원재료 검사 → 적합 판정 → 인증발급



4 수출 애로사항

No. 1	제목	잔류농약 감시의 강화로 수출 시 주의 필요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농식품
			유형*	SPS
	주요 내용	· 태국 식약청(FDA)은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잔류농약 분석 성적표(COA)를 첨부할 것을 2020년 1월 24일 공지하고 이날로부터 시행함 · 관련 규정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추가 규정된 것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성적서의 제출이 요구됨 · 만약 해당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샘플 검사가 진행됨 · 수입 과채류뿐만 아니라 태국 내 신선 과채류 선과장 및 판매소에서도 잔류농약 포함 여부를 검출하는 등 감시 조치가 강화된 바 있음 · 태국에서는 신선과채류 수입시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하며, 고위험군품목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애로·건의 사항	· 최근 수입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감시가 강화되어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기타	※ 태국 품목군별 샘플검사 방식 (1) 고위험군 품목 · 고위험군 리스트의 경우 문제가 되는 수출업체와 품목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됨 · FDA가 채취한 샘플을 수입사가 수취하여,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해 샘플검사를 진행해야 함 (2) 위험군 품목 · 과일류와 채소류 10개 품목이 해당되며, 해당 품목은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3) 저위험군 품목 ·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		

No.	제 목	소금세 적용으로 관련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주시 필요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소금
2			유형*	TBT
주요 내용		·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장려를 위해 2022년부터 고나트륨 식품에 최대 880억 바트 규모의 소금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2년 연내에 징수 예정인 소금세 적용대상 식품은 전체 즉석식품 시장의 18%, 약 880억 바트(약3조 1,530억원)규모로 예상됨 · 징수 대상 품목으로는 라면, 냉동식품, 즉석 죽 등 즉석식품, 생선통조림, 스낵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고당 음료에 세금을 징수하는 기존방식과 유사하며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애로·건의 사항		· 당사는 소금을 취급하는 업체로, 최근 태국에서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가 적용된다고 하여 소금 수출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		

No.	제 목	태국 식품 수출 시 필요한 인증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닭가슴살
3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 2021년 10월 7일, 태국 보건부는 보건부 공지(제420호)에 의거하여 식품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생산관련 인증의 운영지침을 공지함 · 이에 따라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GMP, HACCP, ISO22000, BRC, IFS 등 지정 발행기관의 생산기준 확인서 또는 인증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인증서 제출 대상 품목에는 대량 포장된 쌀, 밀 곡물, 후추, 고춧가루, 마늘 가루, 설탕, 냉장·냉동육 및 내장, 냉동 생선 등의 식품과 기존 보건부 공지 제 386호에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던 신선과일, 채소류도 포함됨 · 현재 태국 보건부는 타국산 식품의 수입 부분에 엄격한 행정절차(검사 등)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애로·건의 사항		· 당사는 닭가슴살을 취급하는 업체로, 태국 수출 시 수출 진행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현지 업체에서 요청하는 자료 중에 실제 인증에 필요한 자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		

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식품첨가제)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변성전분이 식품향료의 원료로써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파우더 식품 향료로 사용되는 가루(Maltodextrin carrier/solvent)의 FDA 통관과 태국 검역 시 문제 여부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태국에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제 여부

- 해당 식품첨가제는 식품 제조시 ‘유화제’, ‘안정제’, ‘시크너’의 기능을 하는 용도의 식품첨가제로 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제임

○ FDA 통관과 태국 검역시 문제 여부

- 식품첨가제는 태국 식품법상 구체적 통제식품군에 포함되며, 태국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가 식품 수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식품 수입 이전에 태국 FDA에 해당 식품의 식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태국 FDA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등록서류 및 식품의 안전도 확인을 위한 성분검사(COA)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분 검사 및 제품의 상품성 확인을 위한 샘플을 수입할 수 있음
- 샘플을 수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식품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태국 FDA에 임시수입허가를 받고 샘플 수입을 진행하여야 함
- 구매 고려 및 레시피 등록을 위한 식품 수입 허가서의 FDA의 발행 비용은 THB 2,000이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대행업체의 수수료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임시 수입허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신중히 사용해야 함. 통관과 관련한 임시허가증 외에 다른 특이한 문제 사항은 없음

(2) 고추장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인증서 ISO22000의 기한만료로 FSSC22000 인증으로 변경하여 수출하려고 하는데 FSSC22000 인증이 IAF에 등록된 Accreditation bod이면 바로 변경하면 되는지?
- 태국 식약처에 인증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품질관리인증서 변경 관련 사항

- 태국 식품법에 의거한 수입식품의 허가와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인증서는 HACCAP, ISO22000, GMP가 태국 FDA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인증서이며, FSSC22000의 경우에는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의 승인규격으로 ISO22000과 동일한 인증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Accreditation body)에서 발급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태국 FDA에 신고 필요

- 수입식품의 생산, 제조공정 및 제품의 변형(제조성분 등) 및 포장재(재질, 디자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수입자는 태국 FDA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현재 문의하시는 제조 생산시설의 변경 및 인증서 변경/갱신은 식품 수입 라이선스 및 FDA의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어, 수출품의 태국 수입통관 시 LPI(License per invoice)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함
- FDA의 LIP 현장 담당자마다 성향이 달라 인증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세세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만약 LPI 과정에서 유효한 인증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한 인증서로 업데이트 될 때까지 세관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드에 화물 보관을 강제할 수 있음
- 현재 태국도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상황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태국 FDA도 코로나 상황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대면 서류접수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온라인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자문 결론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서는 갱신해야 함으로 갱신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판단됨. 갱신된 인증서는 앞선 자문내용과 같이 외교부,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 태국 수입업체에 송부 바람. 변경된 인증서로의 정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라 FDA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3) 일반식품 - 가공스낵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스낵류를 태국에 수출하려고 준비하던 중 생산 포장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 오류 발생
- 태국 식품법상 라벨링 규정
-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반품(Ship Back)에 대한 절차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HS CODE 및 관세율

부 류	품명	HS CODE	관세율		비 고
			일반	FTA	
빵,케익, 비스킷	코코아를 함유한 비스킷	1905.31-20	20%	면제	(-)

- 빵류, 케익, 스낵류의 일반 관세율은 CIF Value의 30% 이며, 비스킷 및 와플의 경우 CIF Value의 20%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수입통관에 제출 시 한-아세안FTA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Exempted) 받을 수 있음
- 스낵류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적용된 설탕세(Sugar tax)에도 해당되므로, 제품의 제조성분 중의 총 설탕중량에 따라 20%의 설탕세를 제품 판매가에 간접세로 포함시켜야 함

□ 설탕(Sugar) 중량 측정 기준

설탕(Sugar) 또는 설탕(Sugar)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중 설탕(Sugar)의 양을 모두 합한 설탕(Sugar)의 총합을 과세 기준으로 함

○ 식품법의 분류

- 스낵류의 경우 태국 식품법(Foods Act. 2522)의 식품분류기준에 따라 Standardized Foods의 Category에 해당되며 품질 및 라벨링 표기사항이 태국 FDA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태국 식품법(Foods Act. 2522)의 식품분류기준

태국은 식품법(The Food Act B.E 2522)의거 보건부 산하 태국식약청 TFDA에서 식품의 수입/유통과 관련한 인허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기 4가지의 식품분류를 기준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1) 구체적통제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 분유, 우유, 조미료 등이 해당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판매, 마케팅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표준규격식품(Standardized Foods)

- 차, 커피, 초콜릿, 식용유 등이 해당되며 식품안전에 대한 심사 및 인허가를 충족하여야 함

3)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bear Label) 빵, 캔디, 인스턴트 식품

- 자문 요청하신 제품의 해당 카테고리로 추정되며, 식품 수입 및 유통을 위하여 제품의 수입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일반식품(General Foods)

- 육류, 생선, 계란 등 가공되지 않은 일반 식품류에 해당하며 검역 등의 수입사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함

○ 태국 식품법의 라벨링 규정

- 태국 식품법(Foods Act. 2522), 식품 라벨링 규정(Act. B.E.2557) 및 부속서 검토 결과, 유통기한 정정 또는 변경에 대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음
- 태국 FDA Foods Control Division에 유선 문의한 결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Sticker, Label, Tag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입허가 절차에서 허가 등록된 라벨과 다를 경우 FDA에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출 선적 전에 표기에 오류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의 정정일 경우에는 도착항(항만 및 공항)에 화물이 도착 후 통관 전 보세구역 안에서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FDA에 정장사항 및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태국 표준 라벨링 표기 규정	
항 목	설 명
표기 언어	기본적으로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어 및 외국어 병기 가능
글자 크기	최소 2mm 이상, 배경의 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표기
제품명 및 설명	세부명 및 통칭되는 이름중 하나 이상을 기록
구성성분	방부제, 색소, 조미료, 인공감미료 등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모두 표기
영양정보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을 정확한 함유량과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열량, 당, 지방, 나트륨 순서로 표기)
순중량	미터법을 활용하며 주재료의 경우 전체 중량 대비 비율도 명시
식품첨가물	식품라벨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 천연 혹은 인공 착색소 첨가 시 표시하며, 조미료 사용 시 '00조미료 첨가'를 보색으로 표기
제조사, 수입자, 유통자 등의 상호 및 주소	무역업체, 재 포장업체 내지는 판매처 이름 또는 각 기업의 대표명을 눈에 띄는 곳에 표기
소비, 제조날짜	소비기한 및 제조날짜를 일, 월, 년으로 표기할 것
식품 일련번호	식품일련번호(Food serial number)는 태국 식약청(FDA)이 밀봉용기에 담긴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승인번호로 13자리 숫자로 구성

○ 제품의 이상으로 수출국으로 반품을 진행할 경우(Ship back)

- 수입하는 화물의 반품(Ship back)을 진행할 경우, 통관 전 Ship back과 통관 후 Ship back으로 나눌 수 있음
- 수입 통관 전 Ship back: 제품의 반품 결정이 수입통관 전에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해당 화물을 Ship back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이용 선사 또는 포워딩 업체를 통하여 Ship back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관 후 Ship back: 수입통관 후 Ship back이 결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수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함
- 통관 후 Ship back의 경우, 납부한 수입관세의 반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며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hip back의 결정은 통관 전에 의사결정 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
- 해당 제품은 태국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의 잘못된 표기를 확인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수입통관 전 Ship back을 진행하였음